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8호 2023. 1. 31.(화)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6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 1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3호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7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4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58호 공시송달(2차 보상협의) 공고 18

남해군 공고 제2023-61호 2023년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21

남해군 공고 제2023-62호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26

남해군 공고 제2023-63호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규칙안 입법예고 34

남해군 공고 제2023-80호 동천천 보수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 38

남해군 공고 제2023-8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41

남해군 공고 제2023-91호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43

회 램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조정실(860-3044, 행정 3044)

예 규

남해군 예규 제26호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를 발령한다.

2023년 1월 3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개정예규

남해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를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로 한다.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중전의 제4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중 “자” 를 “사람” 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중 “자가” 를 “사람이”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공익신고의 조사”) 를 (“공익신고의 조사 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민권익위원회” 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연장” 을 “1회 연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후단 중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을 “제7호서식의” 로, “안내문을” 을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건 중 공익침해행위가 확인된 사건” 을 “사건”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을 “행정처분”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조사·수사” 를 “조사” 로 한다.

제18조제6항 중 “법 제9조제5항” 을 “법 제9조제6항” 으로, “법 제9조제7항” 을 “법 제9조제8항” 으로, “재조사·재수사” 를 “재조사” 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조사 또는 이송하지 않거나 종결한 사실” 을 “그 사실” 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군수” 를 “누구든지” 로, “소속직원” 을 “공익신고자등”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수는 소속직원이” 를 “누구든지” 로, “소속직원에게” 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군수는” 을 “공익신고책임관은” 으로, “소속직원” 을 “공익신고자등” 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소속직원이” 를 “공직자가”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속직원” 을 “공직자” 로 한다.

제25조 중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 를 “공익신고자등이 신고” 로, “공익신고자로” 를 “공익신고자등으로” 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공직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공익신고자” 를 “공익신고자등” 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 을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으로, “공익신고자에게” 를 “공익신고자등에게” 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군에서 처리한” 을 “내부 공익신고자의” 로, “공익신고자에게” 를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처분” 을 “판결” 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2년” 을 “3년” 으로 한다.

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따른 환수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 또는” 을 “사람 또는”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자에” 를 “사람에” 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과태료 또는 과징금” 을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 으로 한다.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를 “공익신고자등과 그”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원상회복 관련” 을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으로 한다.

제1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4항제5호, 제18조제5항, 제18조제6항, 제19조

제2항, 제25조 제목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2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국민권익위원회” 를 각각 “위원회” 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7호서식]

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신고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
 - 공익신고자 또는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한 사람에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신분상·인사상·경제적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불이익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공익신고자등은 신변보호조치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동거인이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벌, 징계 및 불리한 행정처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신고와 관련한 형사 및 징계 책임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신고자 보상제도

구 분	지급 대상자	지 급 요 건
보상금	내부 공익신고자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100만원 초과하는 벌금, 과징금 등 부과금액의 4%~20% 지급)
포상금	공익신고자	현저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구조금	공익신고자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치료, 이사, 쟁송, 임금손실 등의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 내부 공익신고자 :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던 사람, 피신고자인 공공기관, 기업, 법인, 단체 등과 공사·용역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홈페이지(www.clean.go.kr)를 참조하거나 아래의 번호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번 없이 1398, 110

■ [별지 제11호서식]

《<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 >》

□ 신고를 준비하실 때

- 언론, 시민단체는 공익신고기관이 아닙니다.
 - 언론, 시민단체에 불법행위를 제보하는 것만으로는 공익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익신고기관(국민권익위, 관련 행정기관·감독기관, 수사기관 등)에 신고해주십시오.
-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해 주십시오.
 - 구체적인 자료·기록 등이 없는 단순 주장,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예. 언론스크랩)만으로는 증거 부족으로 신고가 종결처리 될 수 있습니다.
- 효율적 신고 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 중복 신고를 자제해 주십시오.
 - 다른 기관에서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신고 종결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기관 신고 후 다른 기관 신고, 또는 다른 기관 신고 후 우리 기관에 신고하시면 신고가 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신고를 접수하실 때

- 허위신고, 금품·근로관계상 특혜 요구와 같은 부정한 목적 신고는 신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신고 이후라도 추후 허위신고나 부정한 목적 신고로 확인되면 소급하여 신고자 지위가 상실되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직무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을 신고내용에 포함한 경우는 공익신고기관 외(예. 언론)에 신고내용을 공개하거나 알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자·협조사 보호조치를 신청하실 때

- 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에 대해 범상 보호조치 신청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구조금' 제도가 있어 신고로 인한 재송절차에 비용(예. 변호사 수임료)을 지출하셨다면 국민권익위에 비용 지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언론에 공개 인터뷰를 하시면 신분공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공익신고나 보호신청 시 위원회에 신분공개 비동의 표시를 하셨더라도, 언론에 신분 공개를 동의하신 경우는 타인이나 다른 언론사 등이 신분을 공개하는데 동의했다고 보아 신고자 신분 비밀보장을 더 이상 받기 어렵습니다.

□ 신고 후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보상금을 신청하실 때(내부공익신고자에 한함)

- 보상금은 최초 산정된 금액에서 감액이나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보상금은 신고로 인해 증대된 국가·지자체 수입의 4~20%를 지급하지만, 감액·지급제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액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상금, 중복 지급받은 보상금 등은 환수됩니다.

훈 령

남해군 훈령 제353호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남해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발령한다.

2023년 1월 31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남해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원업무 주관부서·처리부서)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심의회 구성·운영 등 청원의 총괄적 운영에 관한 업무는 청원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에서 처리한다.

제4조(청원심의회 원칙) 심의회는 청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주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군 소관 사무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 5.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6.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제8조(청원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 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

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

제9조(간사) ①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
- 2.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 제11조(심의회 개최 요구)** 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는 제10조 각 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남해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

안건	
일시	. . .
검 토 의 견	

위원 성명 :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청원심의회 심의의결서

안 건	
일 시	. . .
심 의 결 과	

< 남해군 청원심의회 위원 >

구 분	성 명	심 의 의 견			서 명
		찬성 (심의결과 동의)	반대 (심의결과 반대)	비고	
위원장					
위원					

[별지 제3호서식]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1. 청원인

- 성명 :
- 생년월일 :

2. 청원 요지

-
-

3. 개최 이유

-
-

4. 요청 시기

-

5. 검토 의견

- 청원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
-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23-9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5일

남 해 군 수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세부현황

지구명	위 치	지 정 내 용			지정 사유
		유 형	등 급	면 적 (㎡)	
대곡1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267-3번지 일원	붕괴위험	D	1,393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대곡2	경남 남해군 고현면 대곡리 334-3번지 일원	붕괴위험	D	3,609	재해위험도평가에 따른 지구 지정

2. 붕괴위험지역 관리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재난안전과)

3. 붕괴위험지역 지정일자 : 2023. 1. 25.

4.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

지 구 명	사업시기	사 업 내 용	비고
대곡1	2024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1,393m ²	
대곡2	2024년 이후	· 급경사지 정비 3,609m ²	

5. 붕괴위험지역에서 제한되는 행위 또는 금지사항(행위 협의)

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행위

- 1)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관로(管路) 및 철탑의 설치, 도로·교량 등 구조물의 설치 행위
- 2) 토석의 굴착을 수반하는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개축하는 행위
- 3) 옹벽·축대 및 측구(側溝) 등을 변경하는 행위
- 4) 수목을 벌채하거나 잔디 등을 제거하는 행위
- 5) 그 밖에 급경사지의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6. 행위허가 등 사전 협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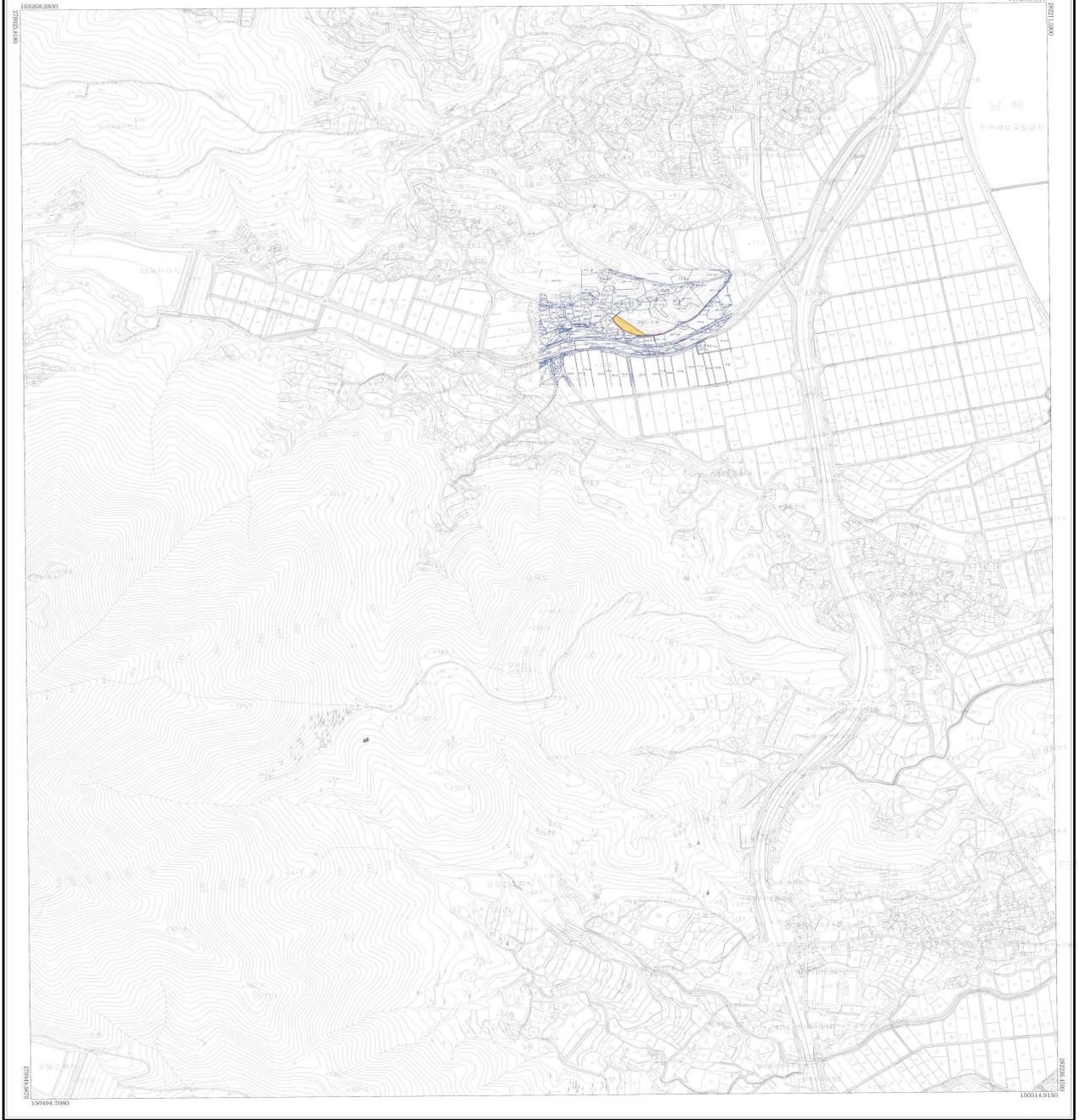
붕괴위험지역에서는 상기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부득이한 경우 또는 안전조치를 원인으로 하는 행위허가 등 절차에 관하여는 사전에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와 협의하여야함.

7. 문의처 : 경상남도 남해군 재난안전과(055-860-329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곡1지구)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1:5,000 지형도

도면번호 34704056



범 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축 척 1 : 5,000
 0 100 200 300 400미터



INDEX

남 해	남 해	남 해
045	046	047
남 해	남 해	남 해
055	056	057
남 해	남 해	남 해
065	066	067

1. 지명	2. 도로	3. 철도	4. 하천	5. 수역	6. 산	7. 봉우리	8. 등기	9. 관공	10. 관아	11. 관아터	12. 관아터	13. 관아터	14. 관아터	15. 관아터	16. 관아터	17. 관아터	18. 관아터	19. 관아터	20. 관아터	21. 관아터	22. 관아터	23. 관아터	24. 관아터	25. 관아터	26. 관아터	27. 관아터	28. 관아터	29. 관아터	30. 관아터	31. 관아터	32. 관아터	33. 관아터	34. 관아터	35. 관아터	36. 관아터	37. 관아터	38. 관아터	39. 관아터	40. 관아터	41. 관아터	42. 관아터	43. 관아터	44. 관아터	45. 관아터	46. 관아터	47. 관아터	48. 관아터	49. 관아터	50. 관아터	51. 관아터	52. 관아터	53. 관아터	54. 관아터	55. 관아터	56. 관아터	57. 관아터	58. 관아터	59. 관아터	60. 관아터	61. 관아터	62. 관아터	63. 관아터	64. 관아터	65. 관아터	66. 관아터	67. 관아터	68. 관아터	69. 관아터	70. 관아터	71. 관아터	72. 관아터	73. 관아터	74. 관아터	75. 관아터	76. 관아터	77. 관아터	78. 관아터	79. 관아터	80. 관아터	81. 관아터	82. 관아터	83. 관아터	84. 관아터	85. 관아터	86. 관아터	87. 관아터	88. 관아터	89. 관아터	90. 관아터	91. 관아터	92. 관아터	93. 관아터	94. 관아터	95. 관아터	96. 관아터	97. 관아터	98. 관아터	99. 관아터	100. 관아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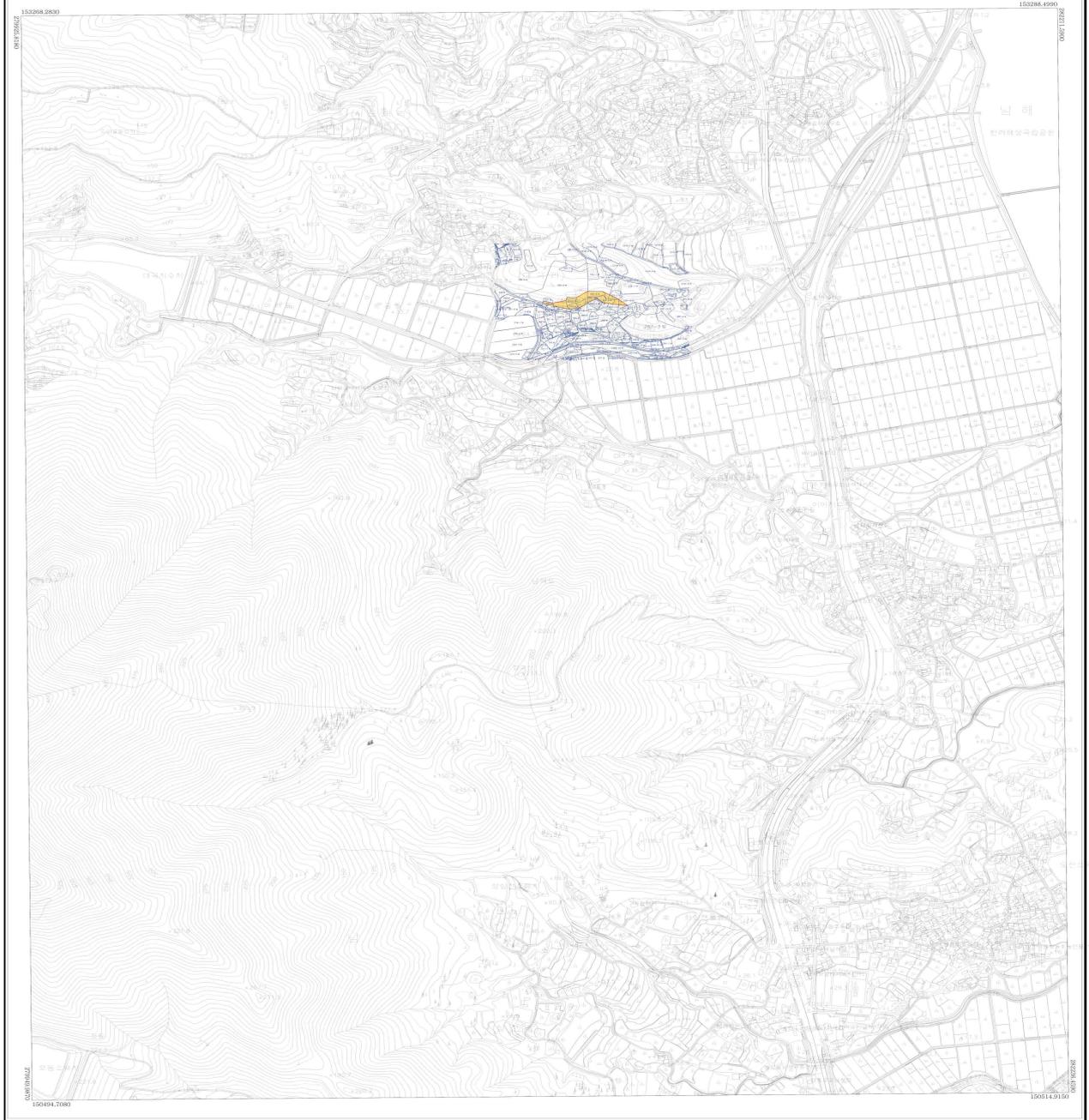
지정권자	남 해 군 수
지정일자	2023년 1월 25일
고시번호	2023년 1월 25일
고시번호	남해군 고시 제 2023 - 9호
작성자	(주)태인이엔씨
작성년월일	2023년 1월 25일
제작권소유 및 발행자	남 해 군 수

구분	입 안 권 자			결 정 권 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태인이엔씨	남 해 군	남 해 군	남 해 군	남 해 군
직위	대표이사	자연재난팀장	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안전과장
직명	특급기술자	지방시일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일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지 지 연	박 문 투	이 연 주	박 문 투	이 연 주
확인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대곡2지구)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

1:5,000 지형도

도면번호 34704056



범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축척 1:5,000



INDEX

남해	남해	남해
045	046	047
남해	남해	남해
055	056	057
남해	남해	남해
065	066	067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지정권자	남해군수
지정일자	2023년 1월 25일
고시년도	2023년 1월 25일
고시번호	남해군 고시 제 2023 - 9호
작성자	(주)태인이엔씨
작성년월일	2023년 1월 25일
저작권소유 및 발행자	남해군수

구분	입안권자		결정권자		
	작성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1차 확인자	2차 확인자
소속	(주)태인이엔씨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남해군
직위	대표이사	자연재난팀장	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안전과장
직명	특급기술자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주사	지방행정사무관
성명	이지연	박문두	이연주	박문두	이연주
확인인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23-58호

공시송달(2차 보상협의) 공고

남해군에서 시행하는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 불명 및 기타 사유로 보상협의 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동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2일

남 해 군 수

- 1.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
 - 2. 사업의명칭 : 큰양아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3. 공고사유 :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주소 또는 거소 불명
 - 4. 공고기간 : 2023년 1월 12일 ~ 2023년 1월 26일
 - 5. 협의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2. 12. ~ 2023. 1.
 - 장소 :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재난안전과)
- (T: 055-860-3293, F: 055-860-3727)

6. 보상시기 · 방법 및 절차 :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보상하며, 보상금은 우리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이후에 계좌로 입금하되, 소유권 이외의 권리(압류, 가압류, 근저당, 지상권 등)가 설정된 경우 이를 말소하여야만 협의계약체결이 가능함.

7.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 주민등록초본(주소 변동내역 기재) 1통
- 통장사본, 인감도장

8. 토지 등의 표시 : 붙임내역 참조

[공시송달대상 토지 등의 표시]

[붙임]

수용할 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남해군)	지번	지목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공부				
상주면 양아리	산291-2	임	19.0	박*운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809	전	112.0	김*팔 (미등기)		
	산289-2	임	880.0	김*주	부산시 서구 괴정동	부산광역시 수영구
						전라북도 정읍시
					김명*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해군 공고 제2023-61호

2023년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5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공고)에 따라 2023년 남해군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남 해 군 수

1. 계획인원 : ○명 내외

2. 명예퇴직 신청

가. 신청대상 :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3조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자로서 정년퇴직일 전 1년 이상의 기간 중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력직공무원

나. 신청기간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명예퇴직 예정일
1. 1. ~ 1. 15.	2. 28.
3. 1. ~ 3. 15.	4. 30.
5. 1. ~ 5. 15.	6. 30.
7. 1. ~ 7. 16.	8. 31.
9. 1. ~ 9. 17.	10. 31.
11. 1. ~ 11. 15.	12. 31.

※ 단,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외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원할 경우 명예퇴직희망일 (매월 말일 기준) 20일 전 신청서 제출자에 한하여 처리

다. 신청절차

- 명예퇴직 희망자는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자필로 작성하여 소속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3.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심사·결정

가. 지급 대상자의 제한

- 군수는 예산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대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규정 제3조제2항)

나. 지급 대상자의 제외

-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함.
 - ①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자,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는 자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
 - ②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③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에 관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자
 - ④ 지방공무원법 제2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제외)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 ⑤ 지방자치단체 기능의 이관에 따라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 직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자

다. 심사기준

- 군수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를 적용한다.

4.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통지

- 가. 군수는 신청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후 지급일, 신청서류 등 필요한 사항을 부서의 장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함.

5. 명예퇴직수당 지급 또는 결정 취소 등

- 가. 명예퇴직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기타의 사유로 지연 지급할 수 있다.

나.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 결정취소, 환수 및 정산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의 규정을 적용함.

6. 행정사항

가. 부서의 장은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명예퇴직원을 작성하였는지와 대상자 제한사유 해당여부를 1차 확인하여 신청 기한내 추천

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참고

다. 문의처 : 행정과 행정팀(☎860-3113)

[별지 제2호서식]

명 예 퇴 직 원

1. 소 속:

2. 직 위:

3. 직급·계급:

4. 성 명:

○ 명예퇴직 사유:

※ 명예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고, 재취업의 경우 대상기관, 직위, 시기(기간) 등을 명시합니다.

○ 명예퇴직 신청일:

○ 명예퇴직 희망일:

※ 명예퇴직 희망일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시 명예퇴직 신청자만 적습니다.

위 본인은 자유의사에 따라 위와 같이 ([]정기·[]수시) 명예퇴직하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남해군수 귀하

남해군 공고 제2023-62호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신설
- 나.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산림휴양팀)
- 연락처 : 전화 055-860-3678, 팩스 860-3985, e-mail : green74@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전화 055-860-367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① 남해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이하 “산림문화 휴양시설” 이라 한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에 따른 재산 손실 및 각종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대상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1. 남해힐링숲타운 : 자생식물원, 유아숲체험원, 나비생태관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남해군 삼동면 금암로 562-23 일원에 위치한다.
2. 망운산 산림욕장 : 체험시설, 숲길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로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 106-1 일원에 위치한다.

제4조(관리 또는 업무 위탁) 군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 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휴장일)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매주 월요일
- 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남해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① 군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사용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 1. 정신질환이나 감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 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가진 경우
- 3.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 목적으로 입장하는 경우
- 4.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 및 흡연 행위를 하는 경우
- 5. 제8조의 사용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
- 6. 그 밖에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경우나 중지 또는 취소된 경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수칙의 수립·게시 등) 군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 조성관리를 위하여 사용수칙을 수립하여 제9조의 사용료 등과 함께 사용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등) ①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입장료 및 입장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특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로부터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예약)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리 사용예약을 하여야 한다.

- 1. 단체로 방문하고자 하는 경우
- 2. 체험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반환에 드는 결제대행업체 및 금융기관 수수료 등을 공제할 수 있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 2.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설을 휴장한 경우 : 전액 반환
- 3. 사용자가 시설 사용 예약을 사용 전에 취소한 경우 :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 반환
- ② 사용자가 사용 당일 사용예정 시간 후에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일 취소로 본다.

제12조(강사 초빙 등) ① 군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 ① 군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홍보상품 제작·판매) 군수는 산림문화 휴양시설을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상품(인쇄물 포함)을 제작·판매할 수 있으며, 상품의 가격은 제작 실비를 반영하여 정한다.

제15조(수입금의 처리) 산림문화 휴양시설 운영 수입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별표 1】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및 감면 기준(제9조제1항 관련)

□ 입장료 기준

시설명	구 분	1인당 입장료(원)		비 고
		개인	단체	
남해힐링숲타운	성 인	2,000	1,600	
	청소년·군인	1,500	1,200	
	어 린 이	1,000	800	
망운산 산림욕장	-	무료		

※ 참고

- ① 단체 : 입장료 면제 대상 인원을 제외하고 20명 이상인 경우
- ② 성인 : 19세 이상인 사람
- ③ 청소년 :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 ④ 어린이 :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 ⑤ 면제 대상 : 7세 미만인 사람

□ 감면기준

구 분		감면기준
입 장 료	면제	1. 공무수행상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로 사용할 경우 3. 시가 후원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전시회, 공연하는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면	1.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남해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3. 증빙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30% 감면	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보호자(1명 한정)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와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 6. 국가보훈대상자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 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만 24세 미만 자녀를 셋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별표 2】

산림휴양시설 시설별 사용료 반환 기준(제12조 관련)

구분	반환기준		비고
	기간(사용예정일 기준)	비율(총요금 기준)	
비수기	7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50% 공제 후 반환	
성수기	10일 전까지 또는 예약당일 (24시간 이내) 취소	100% 반환	
	7일 전까지 취소	10% 공제 후 반환	
	5일 전까지 취소	30% 공제 후 반환	
	3일 전까지 취소	50% 공제 후 반환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	80% 공제 후 반환	

남해군 공고 제2023-63호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폐지이유

남해군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 및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월 3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 소 : 우)52430 경남 남해군 이동면 남해대로 2449
남해군농업기술센터 산림공원과(산림휴양팀)
- 연락처 : 전화 055-860-3678, 팩스 860-3985, e-mail : green74@korea.kr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산림공원과 산림휴양팀(전화 055-860-3678)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규칙】

남해군 규칙 제1092호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해군 나비생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료 징수)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현황과 관람료 징수관리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당일 징수한 관람료는 그 다음날까지 남해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관람권)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나비생태공원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은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고 각각 일반인, 청소년, 군인 및 어린이로 구분하여 관람 금액과 함께 표시한다.

②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관람권의 출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공고 제2023-80호

『동천천 보수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

「동천천 보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9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예정) : 2023. 1. ~ 2023. 6.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동천천 보수공사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69번지 일원	하천정비 B=7m~12m, L=139.4m	남해군/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2. 열람장소, 열람기간

- 열람장소 :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 열람기간 : 2023. 1. 19. ~ 2023. 2. 2.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2023. 1. 19. ~ 2023. 2. 2.
- 제출방법 :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사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비 고
	군	면	리					성 명	주 소	
1	남해	삼동	동천	969	답	887	100	하은오	경남 진주시 망경동 00	
2	남해	삼동	동천	968-1	답	1,600	155	박상오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00	
3	남해	삼동	동천	968-2	답	922	170	임정오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0	
4	남해	삼동	동천	967	답	668	249	임정오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0	
5	남해	삼동	동천	965	답	919	212	임정오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0	
6	남해	삼동	동천	952	답	1,134	676	최무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7	남해	삼동	동천	1074-1	답	501	2	강남오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00	
8	남해	삼동	동천	949	답	1,676	208	김덕오 이성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0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00	
9	남해	삼동	동천	950	답	1,375	179	김덕오 이성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0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00	
10	남해	삼동	동천	951	답	1,352	289	최원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11	남해	삼동	동천	948	답	1,398	19	이수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12	남해	삼동	동천	2042	구	26,104	55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38,536	2,813			

남해군 공고 제2023-82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동천천 보수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 제10조(출입의 통지)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남 해 군 수

1. 출입토지의 내용

- 공 사 명 : 동천천 보수공사
- 출입구간 :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969번지 일원

2. 출입기간 : 2023. 1. ~ 사업 종료 시까지

3. 사업시행자 : 남해군수(재난안전과장)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재난안전과 하천관리팀 (☎055-860-349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입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편입)	지목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비고
	군	면	리					성명	주소	
1	남해	삼동	동천	969	답	887	100	하은오	경남 진주시 망경동 00	
2	남해	삼동	동천	968-1	답	1,600	155	박상오	남해군 남해를 망운로 00	
3	남해	삼동	동천	968-2	답	922	170	임정오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0	
4	남해	삼동	동천	967	답	668	249	임정오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0	
5	남해	삼동	동천	965	답	919	212	임정오	남해군 삼동면 동부대로 00	
6	남해	삼동	동천	952	답	1,134	676	최무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7	남해	삼동	동천	1074-1	답	501	2	강남오	남해군 삼동면 양화금로 00	
8	남해	삼동	동천	949	답	1,676	208	김덕오 이성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0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00	
9	남해	삼동	동천	950	답	1,375	179	김덕오 이성오	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00 경상남도 진주시 금산면 00	
10	남해	삼동	동천	951	답	1,352	289	최원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11	남해	삼동	동천	948	답	1,398	19	이수오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00	
12	남해	삼동	동천	2042	구	26,104	554	국	국(농림축산식품부)	
계						38,536	2,813			

남해군 공고 제2023-91호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군세 감면조례」

2. 개정이유

일몰 도래한 군세 감면사항 중 세체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몰 도래에 따른 기한 연장

- 1) (현행) 2022.6.30. → (개정) 2024.12.31.
 - 시각장애인(장애등급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연장 (안 제2조)
- 2) (현행) 2022.12.31. → (개정) 2024.12.31.
 - 문화재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5조)
 -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6조)
 -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8조)
 -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연장(안 제10조)

나.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면기간 종료에 따른 조문 삭제

- 1)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안 제10조의2)
- 2)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 (안 제10조의3)
- 3) 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조문 삭제(안 제10조의4)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23년 2월 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2). 연락처 : 전화 055-860-3172, 팩스 055-860-3705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재무과 부과팀(전화 055-860-31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9조제4항” 을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을 “법 제17조제1항” 으로, “2022년 6월 30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 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8조 중 “2022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 중 “2022년 12월 31일” 을 “2024년 12월 31일” 로 한다.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감면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④ (생략)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재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 3. (생략)

제8조(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 2024년 12월 31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

----- 2024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6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 2024년 12월 31일-----

-----.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농공단지 대체임주자에 대한 감면)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0조의2(소상공인 임대료 인하에 대한 감면)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물(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게 건축물 임대료(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임대료를 말한다)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하는 경우, 2022년 7월에 부과하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에 제2항에 따른 감면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 2024년 12월 31일 -----

 -----.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

 ----- 2024년
 12월 31일 -----.

<삭 제>

1. 삭제

2. 삭제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율”은 다음의 임대료 인하율 구간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임대료 인하율”이란 임대료 인하 직전 월 임대료에서 인하 기간 평균 월 임대료를 뺀 금액이 직전 월 임대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한 개월 수에 100분의 5를 곱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하여 감면을 적용한다.

⑤ “월 임대료”는 보증금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제10조의3(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2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는 사업소분 주민세(「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세율을 적용)에 한정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가목의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삭 제>

2.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1)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3. 「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1호 나목

4) 그 밖의 법인

제10조의4(가산금 등에 대한 감면) 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균세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균세에 대한 가산금 등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제1항에서 “가산금 등” 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지방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가산금

2. 「지방세징수법」 제31조에 따른 증가산금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지방세를 3회(「지방세징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3회를 말한다) 이상 체납한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2. 27., 2014. 1. 1., 2014. 3. 24., 2020. 1. 15.>

1. 서민생활 지원,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대중교통 확충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특정지역의 개발, 특정산업·특정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14. 1. 1., 2014. 11. 19., 2017. 7. 26., 2020. 1. 15.>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감면액을 확대하거나 지방세 감면 대상·적용 대상자·세목·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지방세 감면규모 등)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세 감면(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필요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1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의 대응 및 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감면 신청) 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6항 및 제1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